

● 제33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181)

2025. 12.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번호 3181

### 1. 발의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찬성 15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2. 주문

-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영양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 3.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센터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은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위생·영양 관리,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식중독 예방과 건강증진 등 공공영양관리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지역 센터 종사자 316명 전원이 위탁기관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로, 위탁 기간(3~5년)에 따라 반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용승계나 정규직 전환 체계가 없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타 복지시설 영양사나 지방직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보수체제로 인해 높은 이직률(연평균 30%)과 업무 연속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센터 근무자의 급여와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통합가이드라인에서도 지자체의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도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 매칭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202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매칭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 중이며, 서울시 역시 자치구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4. 이송처

- 대령통실,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개요

- 동 건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 2 검토의견

####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의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말한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 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3조(업무범위)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2.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영양상담
  6.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2025년 7월 말 기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25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2개 자치구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합 운영(「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및제2항)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25.7.31. 기준)

연번	구분	설치연월일	운영(수탁)기관	’25년 사업규모(억원)		’25년도 총 사업비 (단위:천원)	등록급식소수 (’25.7.31.기준)		근무인원 (’25.7.31. 기준)
				어린이 급식	사회복지 급식		어린이 급식	사회복지 급식	
1	종로구	’17.09.22.	배화여대산학협력단	3	(미운영)	330,000	81		7
2	중 구	’15.04.01.	서울여대산학협력단	3	(미운영)	330,000	72		7
3	용산구	’20.09.01.	숙명여대산학협력단	4	(미운영)	426,600	99		9
4	성동구	’13.12.20.	한양여대산학협력단	5	(미운영)	533,300	163		11

연번	구분	설치연월일	운영(수탁)기관	'25년 사업규모(억원)		'25년도 총 사업비 (단위:천원)	등록급식소수 ('25.7.31.기준)		근무인원 ('25.7.31. 기준)
				어린이 급식	사회복지 급식		어린이 급식	사회복지 급식	
5	광진구	'21.09.01.	(사)대한영양사협회	6	1	750,000	150	66	15
6	동대문구	'18.11.20.	경희대산학협력단	6	(미운영)	640,000	192		13
7	종로구	'19.07.17.	서일대산학협력단	6	1	682,000	193	19	13
8	성북구	'11.04.06.	동덕여대산학협력단	7	(미운영)	743,300	234		15
9	강북구	'13.12.01.	성신여대산학협력단	5	비에산	533,300	139	7	11
10	도봉구	'13.06.01.	덕성여대산학협력단	6	1	750,000	180	41	15
11	노원구	'11.05.30.	서울여대산학협력단	9	1	1,070,000	290	58	21
12	은평구	'11.10.04.	상명대산학협력단	7	비에산	750,000	231	35	15
13	서대문구	'19.09.01.	이화여대산학협력단	4	(미운영)	437,500	146		9
14	마포구	'20.09.01.	이화여대산학협력단	5	1	750,000	182	47	15
15	양천구	'18.08.08.	강서대산학협력단	7	(미운영)	750,000	211		15
16	강서구	'11.06.10.	숙명여대산학협력단	10	1	1,176,600	307	85	22
17	구로구	'13.06.01.	(사)대한영양사협회	8	비에산	856,600	278	1	17
18	금천구	'11.11.01.	상명대산학협력단	5	1	666,600	136	42	13
19	영등포구	'20.09.01.	이화여대산학협력단	6	(미운영)	654,500	218		13
20	동작구	'17.08.30.	(사)대한영양사협회	6	(미운영)	640,000	195		13
21	관악구	'21.12.01.	(사)대한영양사협회	6	(미운영)	640,000	190		13
22	서초구	'13.06.01.	서울대산학협력단	5	(미운영)	533,200	163		10
23	강남구	'21.09.01.	국민대산학협력단	6	(미운영)	640,000	174		13
24	송파구	'13.06.01.	가천대산학협력단	9	2	1,176,600	319	69	21
25	강동구	'13.06.01.	가천대산학협력단	7	1	856,600	252	16	17

※ '25년 최종예산: 11,255,855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26년 예산안: 10,704,000천원(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임

## 나.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열악한 처우 및 평균 이직률

- 그런데 위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급 지급기준'이 '생활임금'보다 낮아<sup>1)</sup> 급여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sup>2)</sup>.

1)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 국비보조 사업(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라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

2) 자료: 박준재 기자, 2023.02.24., "생활임금보다 못한 급식센터 급여 '개편 시급' , 출처 : 대한급식신문,

-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기본급 기준표’를 보면, 센터 소속 팀원 1호봉 기준의 기본급은 월 207만원으로,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246만원보다 약 40만원가량 기본급<sup>3)</sup>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기본급 지급 기준>

(단위 : 원)			
호봉	팀장	팀원	행정팀원
1호봉	2,370,230	2,076,680	2,011,790
2호봉	2,410,920	2,111,390	2,040,220
3호봉	2,466,740	2,151,050	2,079,570
4호봉	2,540,590	2,191,110	2,119,220
5호봉	2,620,730	2,230,870	2,158,670
6호봉	2,700,350	2,286,080	2,213,470
7호봉	2,778,520	2,350,760	2,277,530
8호봉	2,852,990	2,412,260	2,338,510
9호봉	2,922,830	2,470,140	2,395,780
10호봉	2,989,570	2,525,250	2,450,370
11호봉	3,052,190	2,576,950	2,501,760
12호봉	3,113,790	2,627,940	2,552,230
13호봉	3,171,980	2,676,240	2,600,020
14호봉	3,228,220	2,722,700	2,646,070
15호봉	3,281,270	2,766,580	2,689,530
16호봉	3,332,050	2,808,600	2,731,250
17호봉	3,381,590	2,849,490	2,771,620
18호봉	3,427,320	2,887,290	2,809,110
19호봉	3,471,820	2,924,170	2,845,780
20호봉	3,514,360	2,959,390	2,880,700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연도별 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생활임금 (시간)	10,523	10,702	10,766	11,157	11,436	11,779
상승률	3.7%	1.7%	0.6%	3.6%	2.5%	3%
*월급	2,199,307	2,236,720	2,250,094	2,331,813	2,390,124	2,461,811

3)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수는 매월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임상영양관리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월급: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또한, 이번 건의안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라고 함<sup>4)</sup>.
- 이처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서울시 내 25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에 달한다고 함<sup>5)</sup>.

####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보조 관련 현행법령과 한계

- 물론, 현행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면허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임.

##### \*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4)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 2023.07.03.,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연봉 역차별 심화” -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위생·안전 책임질 수 없어 -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정책토론회 추진 밝혀’

5) 위 보도자료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 수당

- 매월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임상영양관리수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표 III-12]에 따른다.
  - 다만, 임상영양관리수당은 임상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업무를 분장하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
  - 그 외 지자체 별로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면허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표 III-12 수당 지급기준

직 급	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임상영양관리수당	명절휴가비
팀 장	140,000원	125,000원	150,000원	100,000원	500,000원
팀 원	140,000원	125,000원	-	100,000원	400,000원
행정팀원	140,000원	105,000원	-	-	400,000원

- 다만, 현행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도에서만 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

고 있는 실정임<sup>6)</sup>.

-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급여 편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건의안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됨.

### 3 종합의견

- 동 건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의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위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기본급 기준표’를 보면, 센터 소속 팀원 1호봉 기준의 기본급은 월 207만원으로,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246만원보다 약 4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서울시 내 25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에 달한다고

6) 자료: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2025. 9. 8. (월)) 자료집

※ 인천광역시: 2025년 1월부터 1인당 명절수당 지원(팀원 1호봉 급여 기준 120% 지원·기존 명절수당 제외한 금액 지원 시비(50%), 구비(50%))

※ 충청남도: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 이하 팀원 월 50,000원 지급(도비(30%), 시비(70%))

※ 광주광역시는 2024년 1월부터 1인당 월 150,000원 지원, 시비(100%).

함.

- 물론, 현행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임.
- 다만, 현행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도에서만 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급여 편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건의안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의안번호  
3181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촉구 건의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상욱 의원	2025. 10. 20.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p>〈건의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지도 등 공공영양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낮은 보수체계로 인력 확보와 전문성 유지 문제가 대두됨</li> <li>○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지원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와 서울시 의회에서는 센터 직원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li> <li>○ 이와 관련하여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li> </ul> <p>〈건의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영양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지원 확대</li> </ul>				
추진경과	○ 2025.10.20. 건의안 의원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li> <li>○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은 센터를 설치한 전국 시·군·구 공통 사항이므로,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법령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정비·보완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 기준 마련과 국비·지방비 매칭 등 예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다만, 서울지역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자치구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함 (※서울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 17개 자치구에서 시·구비 매칭 편성 가능 통보)</li> </ul>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팀장	김능희(☎2133-4737)	담당	김지선(☎2133-4720)